

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현행 규정상 지방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월 지급한도액외에 1건당 한도액을 두고 있어 고액채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1건당 한도액을 삭제하고, 포상금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포상금 지급한도액중 1건당 한도액(100만원)을 삭제함 (안 제3조의3).
- 나. 포상금의 지급기한을 등을 명확히 규정함 (안 제7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입법예고기간 : 2004. 5. 15 ~ 6. 4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중 “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전당 100만원,” 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.

② 포상금은 제1항에 의한 심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임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이 봉 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김 향 용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복 수 (행정 2181)

신·구 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3(지급한도) 제3조 및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<u>부과기준에 의한 미수징수금 1건당 100만원,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7조(포상금 지급) <u>시장은 전조의 신 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.</u></p>	<p>제3조의3(지급한도) ----- ----- <u><삭 제></u> ----- ----- --</p> <p>제7조(포상금 지급) ① <u>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포상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포상금은 제1항에 의한 심사가 완 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.</u></p>
<p>제8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『중소기업육성기금』 운용시 고금리상품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설투자자금의 대출상환기간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며, 기금으로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구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시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도 예치하여 기금 수익을 극대화 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, 기업의 첨단설비,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함(안 제9조제5항).
- 다. 기금으로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정 함(안 제10조제4호 신설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지방자치법 제133조

第133條 (財產 및 基金의 設置) ①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.
 ② 第1項의 財產의 보유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③第1項에서 “財產”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產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.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04. 4. 20 ~ 5. 10 (20일간)

기타참고사항 : 별첨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한다.

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, 저축성예금,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,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기업지원센터
임 안 자	소장	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
	담당	기업지원담당 이정민
	담당자	김경림 (행정 2841)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(이하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으로 예탁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금, 저축성예금,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융자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9조(융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, 시설투자자금의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기금의 지출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.</p> <p>1 ~ 3. <생략> <신설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0조(기금의 지출) ----- -----</p> <p>1 ~ 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<u>매입비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